

행정처분기준(제17조 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 법 조항	행정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25조제1 항제1호	자격취소
2.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된 경우	법 제25조제1 항제2호	자격취소
3.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·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 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가.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된 경우 나.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.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25조제1 항제3호	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
4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한 경우 가.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. 1회 대여한 경우 다.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	법 제25조제1 항제4호	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